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백철현 의원외 6명(백철현 의원 대표발의)

2. 개정이유

○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자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꾸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(안 제4조)

나. “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”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.(안 제4조)

4. 관련법령

○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5조

5. 검토의견

○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공인의 개각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백철현 의원외 6명(백철현 의원 대표발의)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며,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고 또한 선서방법을 명확히 하고, 선서문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“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함.

나.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, 인용법령명에 낫표 표시(안 제1조, 제5조, 제9조, 제18조, 제19조)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

5. 검토의견

○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지방자치법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,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앞뒤 낫표표시, 선서 방법의 명확을 기하고, 선서문을 명시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자치 입법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합법적, 합목적적이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백철현 의원외 6명(백철현의원 대표발의)

2. 개정이유

○ 「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시 시행하게 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5조)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
5. 검토의견

○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「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치입법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